

부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1. 13. 10:00경 서울지방경찰청 C팀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4. 원고가 알려준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E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다시 위 E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 명의의 F조합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이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피고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2020. 2. 3. 피고 계좌 중 13,900,000원이 지급정지되었다.

##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돈의 일부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 금전이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편취한 것이고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참조).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갑 제6호증(을 제8호증도 같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E는 G를 소개받고 동업을 하기 위해 G의 요구로 위 하나은행 계좌를 알려주었고, 2020. 1. 14. 위 계좌에 20,000,000원이 입금되자 G의 지시에 따라 피고 계좌로 13,9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는 H라는 상호로 운송업에 종사하고 사람으로서 I에게 1,400,000원 상당의 운송료 채권이 있었던 사실, I은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계좌로 운송료를 송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E 이름으로 송금된 돈이 금융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재원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